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12,525,276 | 12,375,758 |
| 일반회계 | 395,963,112 | 11,878,893 |
| 특별회계 | 16,562,164 | 496,865 |
| 기타특별회계 | 16,562,164 | 496,865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444,270 | 13,328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22,073 | 662 |
|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| 7,387,012 | 221,610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754,734 | 22,642 |
| 주차장특별회계 | 7,954,075 | 238,622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034,74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※ 의존자원 표시

국고보조금→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→지 기금→기 시비→시 특별교부세→특세

특별조정교부금→특금